3.1.12 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

제정 1996. 07. 23. 개정 2000. 04. 21. 개정 2009. 09. 07. 개정 2018. 01. 25. 전부개정 2021. 01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초당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발전기금 설치,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2.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- 3.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
- ② 다음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한 발전기금을 지정 용도에 사용할 경우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되, 교무처장, 기획연구처장, 학생복지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, 본 대학교 구성원과 동문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연구처에서 주관하며,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(임기)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고문추대) 위원회의 사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) ① 위원회의 재정은 일반회비, 특별회비, 기타 기금으로 충당한다.

② 회계연도는 학교회계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